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22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김태선·조인철·장철민

안호영 · 김태년 · 박홍배

한민수・박 정・정준호

이용우 · 김주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 경비 체계에서 국회의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서울경 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경비와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회경비대가 행정부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운영됨에 따라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시에는 국회경비대가 입법부 보호보다 계엄사 령관의 지휘를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적 원칙과 입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는 민주적 통치의 중심으로서 입법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에 따라 국회의 경비 및 경호 체계 또한 입법부의 필요와 특수성을 반영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경찰공무원이 국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

하기 위해 국회의장의 지휘를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 경비 체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법부의 헌법적 권위와 국민의 신뢰를 보다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안 제144조 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계엄법」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시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계엄법」에도 불구하고 계
	엄 선포시 제3항에 따른 경찰
	공무원은 의장의 지휘를 따른
	<u>다.</u>